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의 안 번 호 228

발의연월일 : 2023. 8. 30.

발 의 자 : 원주영, 김지훈(국), 한근수,

전혜연, 김지훈(민), 이수련,

박은경, 정현미, 박경원, 김영실

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기업활동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장애인기업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을 규정(안 제8조~제9조)
- 바.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~제11조)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- 5. 관련법령 :
 - 가.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
 - 나. 「중소기업기본법」
 - 다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장애인"이란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 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장애인기업"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 - 3. "장애경제인"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 - 4. "장애인기업제품"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·정보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5조(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 - 3.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·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
 - 5.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양주시(이하 "시"라한다)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.
 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 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 - 2.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·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 래처로 규제된 기업
 - 3.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
 - 4.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
 - 5.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
- 제7조(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

- 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1.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연수
- 2. 장애인 창업 지원
- 3.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
- 4.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
- 5.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
- 6.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
- 7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8조(장애인기업의 우대)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.
 - 1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
 - 2. 「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(구매촉진)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홍보)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 - 1.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
 - 2.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
 - 3.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
- 제11조(포상)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·단체 등에게는 「남양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- 제7조(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연수
 - 2. 장애인 창업지원
 - 3.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
 - 4.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
 - 5.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
 - 6.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
 - 7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 첨부 사유

향후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
4. 작성자

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임대훈

관계법령

☑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3. 21.>
 - 1. "장애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
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
 - 2. "장애인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 - 가.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
 - 나.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고용비율"이라 한다)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인 기업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3. "장애경제인"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.
 - 4. "공공기관"이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·정보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 켜야 한다.
 - ② 정부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 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

창업에 필요한 시설·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
- 제9조(자금지원 우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(「중소기업기본 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직접 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기업제품"이라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.

☑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-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 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・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☑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 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구매 증대)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"제품"이라 한다) 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(受注) 기회가 늘어나 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(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제5조(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생략
 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공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